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1-32
----------	-------

제출년월일 : 2021. 4.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규정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관련 사항이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목적(제1조)
- 나.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등(제2조)
- 다. 교육실시 방법(제3조)
- 라. 교육강사(제4조)
- 마. 교육의 유예(제5조)
- 바. 교육이수자 관리(제6조)

3. 주요 토의과제

없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타사항

1) 입법예고 : 2021. 2. 25. ~ 3. 17. (제출된 의견 없음)

2)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3)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 해당없음

4)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6) 제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21.3.30.)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등)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조(교육실시 방법) 구청장은 법 제11조의 교육을 반기별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강사)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교육 강사로 구성해야 한다.

1. 음악산업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
2. 재난예방 전문가
3. 그 밖에 음악산업 진흥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유예)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교육대상자의 노래연습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 명부,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비치하여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안 제4조제2항

제4조(교육강사) ① (생략)

- 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에 해당

4. 작성자 : 관광일자리국 문화예술과 박은경 (☎3153-8361)